-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5년 6월 30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5일, 박기열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5년 6월 3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박기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 및 적정 운송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 최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제6호)
-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2015. 6.17 ~ 2015. 6.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수용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적정 운송원가 산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의회의 기연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송원가에 따른 운영적자 발생 요인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특히,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운송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 등의 운송원가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어왔음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운송원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적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송원가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 시의회 의견청취 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 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조례에 두는 것은 법령상 위배되는 않을 것임

#### ※ 참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u>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u>
-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u>.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u>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3. <u>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u>(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 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동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요금 조정의 취지와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다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 의견¹)을 제출 하였음

<sup>1)</sup> 교통정책과-12648(2015.6.19.)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 렴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9조 (생략)	제4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토 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 제17조 (생 략)	제11조 ~ 제18조 (현행 제10조부 터 제17조까지와 같음)